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8회 제2차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4. 12.

고 명 옥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안 설명서

제안자: 고명욱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**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**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안 제4조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매년 11월 16일에서 11월 27일로 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수정 규정하였습니다.

□ 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**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,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고명욱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134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2. .
발 의 자: 고명욱, 임미연, 정순옥,
최홍린, 박왕규, 권숙자,
남현주, 이영빈, 박정환,
정창근, 이진환, 김장관,
박종길, 도하석

1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(안 제4조)
 - 제2차 정례회: 11월 16일 → 11월 27일
-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(안 제5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, 제53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

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11월 16일”을 “11월 27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4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집회일)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<u>11월 16일</u>에 집회한다.</p> <p>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.</u></p> <p>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고,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집회일)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11월 27일</u>-----.</p> <p>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----- <u>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법 제142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~ ⑦ 생략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② ~ ⑤ 생략